

# 英國의 合併規制制度에 관한 考察

丁 炳 然\*

## <目 次>

- I. 序 論
- II. 合併規制制度의 大要
- III. 公正去來廳의 合併審查次와 主管長官의 合併附議
- IV. 合併附議權 위한 審查의 主要問題
- V.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報告와 그것에 대한 措置
- VI. 結 語

## I. 序 論

英國에서는 商去來를 制限하는 獨占行爲나 共同行爲는 慣習法(common law)에 의하여 일찍부터 無效로 되어 왔었으나 1890年 이후의 일련의 判例는 자기의 事業上의 利益의 증진을 목적으로 協定을 체결하는 企業의 權利를 保障하고, 今世紀 前半에 있어서 制限的去來慣行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48년에는 다른 유럽 諸國에 앞서서 「獨占 및 制限的慣行(調查 및 規制)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이 제정되어 獨占禁止政策의 실시를 보게 되었다. 同法은 단순한 競爭의 促進보다도 企業의 合理化, 能率의 增進 또는 生產性의 向上 등과 같은 經濟政策的觀點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競爭의 促進을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美國이나 日本 등의 獨占禁止法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또한 同法은 獨占 그 자체를 禁止하는 것이 아니라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경우에만 이 것을 規制하고 있는데 이러한 立場은 이제까지의 英國의 獨占禁止政策의 傳統的 특징이 되고 있다.

그 뒤로 英國의 獨占禁止法은 現재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친 新法의 制定 및 改正을 통하여 強化 整備되었다. 現在의 獨禁法體系는 (1) 주로 共同行爲를 規制하는 「1976年 制限的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 (2) 消費者保護를 規定하고 獨占과 合併을 規制하는 「1973年 公正去來法(Fair Trading Act 1973)」,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現代基金의 財政的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規制하는 「1976年 再販賣價格法(Resale Prices Act 1976)」 및 反競爭的 行爲를 規制하는 「1980年 競爭法(Competition Act 1980)」 등 4개의 法律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英國의 企業合併規制政策은 獨占行爲나 共同行爲의 規制보다도 뛰어나게 확립되었다. 英國에서 合併規制를 처음으로 成文化한立法은 商務長官(Secretary of State for Trade)이 合併 또는 合併計劃을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에 附議(refer)할 수 있게 規定한 「1965年 獨占 및 合併法(Monopolies and Merger Act 1965)」이었다. 그러나 同法은 별다른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늘날의 英國의 合併規制는 1973年に 制定된 「1973年 公正去來法」을 근거로 하여 實施되고 있다. 全文 XII部 140條로 구성된 同法은 消費者保護와 獨占, 合併 및 制限의 去來慣行의 規制에 관한 實體規定과 이를 施行하는 施行機關 및 節次 등에 관한 規定을 포함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同法에 規定된 合併規制 關聯條項을 근거로 하여, 오늘날의 英國의 合併規制制度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本稿은 I. 序論, II. 合併規制制度의 大要, III. 公正去來廳의 合併審查節次와 主管長官의 合併附議, IV. 合併附議를 위한 審查의 主要問題, V.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報告와 그것에 대한 措置 및 VI. 結語로 構成된다.

## II. 合併規制制度의 大要

### 1. 合併規制制度의 一般的 考察

合併을 調査하고 規制하는 英國의 制度는 처음으로 「1965年 獨占 및 合併法」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나, 同法에 의하여 구성된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는 이러한 權限을行使하지 않았다. 「1973年 公正去來法」은 公正去來廳長(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의 任命을 規定하는 한편, 1965年法을 철폐하고 새로운 規定을 補完하여 合併規制를 强化하였다. 同法에 의하면 合併規制와 관계가 있는 機關은 「商務 및 產業長官(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1) 「公正去來廳長(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 및 「獨占 및 合併委員會(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이다. (以下 편의에 따라서 商務 및 產業長官을 主管長官, 公正去來廳長을 廳長, 그리고 獨占 및 合併委員會를 委員會로 부르기도 한다).

公正去來廳長은 同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合併狀態(merger situation)를 확인하고 主管長

(1) 1973年 公正去來法의 主管長官은 처음에는 「商務長官(Secretary of State for Trade)」이었으나, 다음에 「物價及消費者保護長官(Secretary of State for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으로 바뀌고, 현재는 「商務 및 產業長官(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이다.

官에게 勸告를 하기 위하여 항상 企業의 合併活動을 監視하는 責임을 진다(法 第76條). 廳長의 報告를 받은 主管長官은 法律適用의 범위에 속한다고 예상되는 特定한 合併狀態를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審查에 附議할 것인지 與否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委員會는 附議된 合併狀態에 대하여, (1) 그것이 同法이 適用되는 合併狀態인지 與否와, (2)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公共의 利益(public interest)에 反하여 행하여지고 있는지 與否, 또는 행하여질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與否를 調査하여 主管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法 第64條(1) 및 第69條(1)). 만일 委員會가 附議된 合併이 法律의 適用對象이 되고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報告한다면, 廳長은 (1) 主管長官에게 취해야 할 措置에 관하여 勸告하고(法 第86條(1)), (2) 만일 主管長官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合併當事者들로부터 그들의 장래의 行動에 관한 約束(undertakings)을 받아내는 의무가 있다(法 第88條(1)). 또한 委員會의 報告書를 受理한 主管長官은 직접 合併을 禁止하거나, (合併이 完了된 경우에는) 分割을 要求하거나, 또는 그 밖에 合併된 企業의 行動을 規制하는 法律的 命令을 할 수가 있다(法 第73條 및 附則 8). 그러므로 委員會가 반대하지 않은 合併에 대하여는 主管長官은 아무런 措置를 취할 수가 없다.<sup>(2)</sup>

## 2. 主管長官의 合併附議

合併을 委員會에 附議하는 것은 主管長官의 權限에 속하는데, 이러한 合併附議(merger reference)는 無制限的인 것과 制限的인 것으로 구별된다(法 第69條(4)).

無制限的 附議(unlimited reference)는 附議할 狀態가 同法의 適用範圍에 들어가는지 與否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지고 있는지 與否 또는 행하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與否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同法 第84條(1)은 委員會가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特定狀況에 관련되는 모든 事項을 고려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다섯가지 事項을 列舉하고 있다. 그것은 (1) 有效한 競爭의 維持와 促進, (2) 消費者, 購買者 및 그밖의 使用者の 利益增進, (3) 競爭에 의한 費用節約과 新技術 및 新製品의 開發 및 使用의 촉진, 그리고 새로운 競爭者的의 용이한 進入, (4) 產業과 雇傭의 균형적 配分의 유지 및 촉진과 (5) 英國企業의 國際競爭力의 維持와 촉진 등이다.

制限的 附議(limited reference)는 委員會가 審查對象 合併狀態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

(2) 다만 新聞合併에 관하여는 보다 더 制限的인 規定이 적용된다(法 第57~63條). 이 規定에 의하면 公正去來廳長은 新聞合併에 관하여 法律의 權限을 갖지 않는다. 즉 發行部數가 50萬部를 초과하는 新聞合併은 主管長官의 同意가 없으면 違法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委員會의 報告를 받은 主管長官은 廳長의 勸告에 의하지 않고 同意를 할 수 있다.

다음에 그 附議에 特定된 事項에 관하여서만 公共의 利益에 반하는지 檢討하도록 하는 合併附議를 말한다. 이를테면 製造會社를 取得한 小賣會社가 그 製造會社의 製品을 供給함에 있어서 자기의 小賣活動에 유리하도록 부당한 差別行動을 할 수 있는가를 委員會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主管長官은 委員會에 대하여 이러한 制限的 附議를 한 일은 없다.

同法은 實現된 合併을 對象으로 하고 있지만, 法 第75條는 또한 計劃 중인 合併을 主管長官이 委員會에 附議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고, 사실상 대부분의 附議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實現되기 前에 意圖된 合併을 附議하는 것은 委員會가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企業을 分割할 필요를 없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委員會에 合併附議를 하는 主管長官은 委員會가 報告書를 提出할 期間을 6個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特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公식적인 要請이 있는 경우에는 3個月까지 그 期間을 연장할 수가 있다(法 第70條). 그리고 主管長官은 無制限的 合併附議를 한 다음 이러한 調查期間 동안에 合併 當事者들이 취하는 行動을 規制하는 命令을 한다. 主管長官의 이러한 權限은 當事者들이 附議나 是正措置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行動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된다. 이를테면 主管長官은 當事者들이 合併을 더욱 進行시키는 것을 막거나, 合併된 企業의 行動을 規制할 수가 있다(法 第74條). 그러나 主管長官은 이러한 命令을 하기보다는 廳長으로 하여금 調査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行動을 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當事者들로부터 받아내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 3. 審查對象合併狀態

主管長官이 委員會에 合併附議(merger reference)를 했을 경우 委員會가 먼저 차수해야 할 일은 附議된 狀況이 同法의 適用範圍에 들어가는지 與否를 판단하는 것이다. 「1973年公正去來法」은 同法의 適用範圍에 들어가는 合併狀態에 관하여 복잡한 정의를 하고, 그러한 合併狀態를 審查對象合併狀態(merger situations qualifying for investigation)라고 표현하고 있다(法 第64條(8)).

모든 合併은 반드시 株式取得의 形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同法은 去來의 形態보다도 그 內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범위 안에는 통상 合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태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合併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事業者基準, 位置基準, 期間基準 및 市場占有率 또는 資產規模基準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審查對象合併狀態가 된다.

첫째로 事業者基準은 두개 이상의 事業者의 구별이 없어지는(cease to be distinct) 合併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法 第64條(1) 및 65條). 여기서 事業者(enterprise)란 어떤 企業의活動 또는 그一部分이라고 정의된다(法 第63條(2)). 事業者의 구별은 (1) 두개 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所有 또는支配下에 있게 되는 경우 또는 (2)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事業者가 競爭을 막기 위하여 運營되지 않게 되는 協定이나 去來가 있는 경우에 없어진다(法 第65條(1)). 두번째 경우는 이를테면 A會社와 競爭關係에 있는 B會社의 活動의 一部 또는全部를 B會社가 壓鎖하는 條件으로 A會社가 B會社에 대하여 報償하거나 株式을 제공하는 去來를 포함한다.

둘째로 位置基準은 雖然 關聯되는 事業者의 하나는 英國에 위치하거나 또는 英國에서設立된 法人의 支配下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基準에 의하여 外國會社가 英國의 事業者를 取得하는 行爲 또는 英國의 會社가 外國의 事業者를 取得하는 行爲는 다 같이 調査의對象이 된다.

세째로 期間基準은 秘密裡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6개월 이내에 행하여진 合併이어야 法律適用의 对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基準이 만들어진 이유는 主管長官이 委員會에附議할 수 있는 期間을 限定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公開的 合併은調査對象이 될 수 없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이 主管長官이나 廳長에게 알려진 뒤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附議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이 수반되지 않는 情報는 合併의 始期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네째로 市場占有基準은 別이 없어지는 事業者가 다 같이 같은 종류의 財貨나 用役의供給에 종사하고, 英國 전체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서 상호 간에 이러한 財貨나 用役에 대하여 雖然 25% 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져야 한다는 基準이고(法 第64條(1), (2) 및 (3)), 資產規模基準은 取得되는 事業者の 資產의 總額이 1천 5백만파운드를 초과해야 한다는 基準이다(法 第64條(1) 및 67條).<sup>(3)</sup>

이상의 諸基準을 충족시키지 않는 合併은 審查對象合併狀態는 아니다. 그러나 主管長官은 이러한 基準이 충족되는지 불확실한 경우라도 이것을 委員會에 附議하여 委員會로 하여금 이 基準이 충족되는지 與否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게 할 수가 있다.

#### 4. 委員會의 報告書와 後續措置

委員會의 報告書에는 附議된 상태가 同法에 의한 審查對象이 되는가, 그리고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合併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法 第72條). 그리고 主管長官에게 報告되는 報告書는 또한 國會에 提出되고 公開되어야 한다(法 第83條).

(3) 당초에는 5백만파운드이었으나 The Merger References (Increase in Value of Assets) Order 1980-SI 1980 No. 373에 의하여 1980년 4월 10일부터 1,500만파운드로 인상되었다.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지는 合併이라는 결론을 포함하는 報告書는 主管長官이 (1) 廳長에게 合併當事者들로부터 그들의 장래의 行動에 관하여 어떠한 約束을 얻어내는 交涉을 할 것을 要求하거나, (2) 是正命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主管長官의 이러한 權限은 報告書의 결론이 審查에 참가한 委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有效하다(法 附則 3의 第16條(2)).

同法 附則 8은 主管長官이 獨占 또는 合併附議에 관한 委員會의 報告書를 근거로 하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命令을 規定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長官은 合併을 分割하고(法 附則 第II部), 계획된 合併의 그 이상의 진행을 禁止시킬 수 있다(法 附則 第12條). 또한 長官은 이를테면 差別行爲를 禁止하거나(法 附則 第6條), 價格이나 料率을 統制하는 등(法 附則 第10條) 合併企業의 行動을 規制할 수도 있다.

### III. 公正去來廳의 合併審查節次와 主管長官의 合併附議

#### 1. 公正去來廳長의 機能

公正去來法은 公正去來廳長(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으로 하여금 競爭과 消費者保護에 관한 政府政策을 施行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 主管部處가 담당했던 대부분의 合併에 관한 業務는 廳長에게 移讓되었다. 合併 및 合併計劃과 관련된 廳長의 任務는 同法 第76條, 第86條 및 第88條에 規定되어 있다. 그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第76條 : (i) 同法에 의하여 調査對象이 되는 實現 또는 計劃된 合併狀態에 관한 情報의 확보. (ii) 主管長官이 合併狀態에 관하여 취할 적당한 措置에 관한 勸告.

第86條 : (i) 獨占 및 合併委員會가 작성한 合併附議에 관한 모든 報告書의 寫本의 접수. (ii) 이러한 報告書에 관한 主管長官에 대한 勸告.

第88條 : (i) 主管長官의 要求가 있는 경우, 報告書에서 지적된 나쁜 結果를 是正 또는 禁止하기 위한 約束(undertakings)을 얻어내기 위하여 嘗事者와 協議하는 것. (ii) 協議한 결과를 主管長官에게 報告하고, 同法 第V部에 규정된 그의 權限의 行使를 勸告하는 것. (iii) 約束을 계속 검토하고, 主管長官에게 다음 措置(이를테면 約束의 變更 또는 命令의 發動 등)을 권고하는 것, (iv) 合併報告書의 결과에 따라서 主管長官이 행한 命令을 계속 검토하고 다음 行動(이를테면 命令의 發動)을 勸告하는 것.

#### 2. 公正去來廳에 의한 合併의豫備檢討

廳長이 上述한 權限과 任務를 수행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公正去來廳의 職員은 직접 當事者를 통해서 또는 新聞報道를 통하여 認知하게 된 合併이나 合併計劃 중에서 同法의 適用對象이 된다고 짐작되는 合併이나 合併計劃을 調査한다. 合併會社의 當事者들은公正去來廳에 合併을 申告할 公式的 義務는 없으나, 大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것을 알리고 있다.

그럴 경우 關聯되는 當事者는 每日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合併을 추진시킨다면, 그것이 委員會에 附議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公正去來廳으로부터 事前에 非公開的 指導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公正去來廳은 제한된 情報의 범위 内에서 유익한 指導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非公開的 指導는 그 合併에 관한公正去來廳長의 最終的 判斷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同法의 適用對象이 된다고 생각되는 合併計劃을 認知하게 된公正去來廳은 公式的 買收가 행하여지기 전에 그 合併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當事者와 접촉한다. 每일 그 合併이 同法에 規定된 市場占有率基準이나 資產基準에 合致한다고 생각된다면,公正去來廳은 當事者와 조속한 會合을 갖는다. 競爭買收인 경우에는公正去來廳은 當事者들을 分離해서 會合하고, 그 合併이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면 兩當事者를 合同으로 만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다. 이러한 會合의 目的是 當事者들로 하여금 그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대하여 가지는 意見을 陳述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公正去來廳은 當事者들로부터 情報를 얻을 뿐 아니라, 그 合併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會社나 個人 또는 協會의 意見을 듣기도 한다. 또한公正去來廳은 政府機關의 그 產業에 대한 資料와 그 밖의 公表된 關聯情報를 이용하기도 한다.

公正去來廳의 이러한 情報는 완전한 秘密이 보장된다. 이와 같이 秘密을 유지하는 목적은 접촉하는 人士들이 자유로 意見을 陳述하게 하고, 合併行爲에 미치는 영향을 排除하려는 데 있다.

### 3. 合併協議會의 役割

合併에 관한豫備檢討를 끝낸公正去來廳의 擔當者は 合併提案의 評價書를 작성하여 合併協議會(Mergers Panel)에 제출한다. 合併協議會는 통상公正去來副廳長(Deputy-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의 主宰下에 모이는 常設部處間委員會이다. 이 協議會는公正去來法上의 根據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關聯部處의 合併에 관한 見解를 廳長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機構이다. 이 協議會는公正去來廳, 政府의 主管部處, 雇傭省 및 財務省 등의 代表들로 구성되며, 그 會議에는 관련되는 會社나 產業에 따라서 다른 部處의 代表도 출석한다.

간단한 경우는 協議會의 公式會議를 거치지 않고 書面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廳長은 이 書面을 근거로 하여 主管長官에게 勸告한다. 그러나 協議會의 構成員은 어떤 合併의 경우를 논의하기 위하여 協議會의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聽長 또는 이를 대신하여 副廳長은 委員會에 대한 附議를 권고하는 경우에——또한 異論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다른 경우라도——報告書를 提出한다. 이 報告書에는 合併提案의 妥否, 公共의 利益問題에 대한 評價, 合併協議會의 見解에 관한 記錄 및委員會에 대한 附議與否에 관한 勸告가 포함된다. 또한 그것은 委員會가 報告書를 提出해야 하는 期間을 勸告하기도 한다.

#### 4. 主管長官의 附議決定

公正去來廳長의 勸告를 받은 主管長官은 獨占 및 合併委員會에 附議할 것을 결정한다. 그럴 경우 長官은 그 사실을 公表해야 하지만, 그 理由를 알릴 책임은 없다.

以上에서 설명한 節次는 提案된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主管長官이 委員會에 附議하는 裁量的 權限을 行使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委員會가 자세한 調査와 分析을 통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主管長官의 合併附議에 관한 결정은 公告되고 合併當事者에게 통지된다. 또한 모든 株式去來者들이 그 결정을 지체없이 알 수 있도록 證券去來所에도 알려진다.

委員會에 대한 合併附議가 있게 되면, 合併當事者들이 委員會의 調査를 歪曲시키거나 委員會의 결론대로 措置하기가 어렵게 되는 行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公正去來廳은 통상 이러한 行動을 막기 위한 自發的 約束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만일 만족스러운 約束을 얻어낼 수가 없다면, 主管長官은 委員會가 報告書를 작성하고 主管長官이 이 報告書에 의하여 취해야 할 措置를 發表할 때까지 當事者들이 合併을 더욱 추진시키는 것을 禁止하는 法的 權限을 갖는다.

### IV. 合併附議를 위한 審查의 主要問題

英國의 公正去來法에 의한 合併規制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合併은 公共의 利益에 비추어서 評價되어야 한다는 觀念을 전제로 한다. 즉 合併은 그 자체가 惡이라는 생각은 없으며, 오히려 수많은 合併은 국가의 利益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公正去來法의 合併規定에 의하여 만들어진 制度의 목적은 公共의 利益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合併을 자세하게 獨자적으로 調査하여 정부가 그것을 許容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同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모든 合併은 個別的으로 評價되고 어떤 一定한 準則이나 假定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合併을 規制하는 목적은 公共의 利益에 미치는 得과 失을 評價하고 比較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競爭의 維持가 附議對象이 되는 合併을 결정하는 중요한 考慮事項 중의 하나이지만, 競爭의 측면에서의 판단은 實際의 市場狀態와 앞으로의豫想에 비추어서, 理論的이기보다는 現實的으로 행하여진다. 그리고 또한 이 밖의 중요한 經濟的 社會的 측면도 중요한 考慮事項이 된다.

이러한 接近方法에 의하면 어떤 合併이 附議될 것인지 與否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準則이 일반에게 公表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어떤 市場에서 어느 수준까지 市場占有率을 획득하는 것은 許容되지만, 市場占有率이 그 이상으로 되는 모든 合併은 委員會에 附議될 것이라고 推定할 수도 없고, 一定額을 초과하는 모든 資產取得이 委員會에 附議된다고 假定될 수도 없다. 技術과 組織의 變化, 地域經濟의 발전, 國際競爭力의 變化 등으로 狀況變動은 있기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基準을 公表하는 長點이 그것이 가지는硬直化의 短點을 능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合併에 대하여 현실적 방법으로 個別의 檢근을 하는 制度에 의해서만 이러한 변화하는 狀況에 성공적으로 對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公正去來廳長이 特定한 合併에 대하여 主管長官에게 勸告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중요한 問題들을 알아 보아야 한다. 그것은 대체로 委員會가 모든 調査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을 規定한 同法 第84條의 公共의 利益에 관한 問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公正去來廳은 항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解答을 구하려고 한다. 첫째는 그 合併이 審查對象으로서 同法의 適用範圍에 들어가는가이고, 둘째는 主管長官이 그 合併의 진행을 인정할 것인지 與否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委員會가 보다 더 철저한 評價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事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公正去來廳은 그 合併이 이것저것을 다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公正去來廳長이 이러한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水平合併, 垂直合併, 效率性과 貿易, 國際收支, 雇傭 및 混合合併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를 하는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水平合併

水平合併은 적접적으로 競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同法의 資產規模基準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競爭을 크게 감축시키는 水平合併은 公正去來廳의 신중한 검토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廳長은 競爭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을 인정해야 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當事會社의 하나가 그 자체로서 당장 또는 멀지 않아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競爭의 감축은 회피될 수 없다. 또는 購買者側의 힘이 크거나, 合併으로 效率性, 投資, 雇傭 및 貿易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附議에 반대하는 強力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문제로 되는 生產物間에 같은 部門의 市場에서 서로 補完關係가 있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市場支配力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有害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國內 또는 海外市場에서 보다 더 강력한 敵對企業에 대한 競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合併은 技術進步, 보다 效果的 長期計劃, 研究開發活動의 촉진, 또는 新投資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公正去來廳은 그 產業分野의 중요성과 (다른 國內生產者, 現在 또는 潛在的 輸入, 그 產業으로의 新規進入 또는 代替財로 인하여) 競爭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는지 與否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條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결과적으로 效率性이나 國際競爭力의 증가로 公共의 利益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없다면, 廳長은 競爭의 커다란 감축을 가져오고 그것에 따라서 市場支配力이 남용될 수 있는 모든 水平合併을 委員會에 附議하도록 主管長官에게 권고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 垂直合併

垂直合併이 競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公正去來廳은 이러한 市場支配力의 集中으로 競爭企業이나 직접적 또는 궁극적 消費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與否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자기의 製品을 購買하는 會社를 引受하는 製品供給業者는 가장 效率의in 資源配分을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會社로 하여금 자기의 集團內에서 모든 購買를 하도록 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로 競爭의 供給者들은 자기들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市場에서 排除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統合된 大企業組織은 價格이나 供給을 差別하는 강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集團內의 會社를 다른 會社들과 競爭하는 데 有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垂直合併은 이를테면 보다 더 포괄적인 生產計劃이나 보다 더 경제적인 在庫의 保有와 配分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效率性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垂直의 으로 統合된 企業은 資源配分의 改善을 가져오는 投資나 販賣를 하기도 한다.

水平合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垂直合併에 관하여도 어떤 확고한 準則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관련되는 資產이 크고, 예상되는 혜택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廳長은 委員會에 대한 附議를 勸告해야 할 것인가의 與否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效率性과 貿易

廳長은 또한 合併이 生產, 配給, 販賣 및 管理上의 效率性에 미치는 영향을 評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合併된 企業이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문제이다. 海外로 進出한 販賣組織이나 製品의 統合이 輸出市場을 넓힐 것인가, 또는 어떤 輸出市場의 폐쇄나 顧客들의 移動으로 輸出이 減少할 염려는 없는가? 輸出에 쓰여지는 資源의 量은 증가할 것인가, 減少할 것인가? 輸入이나 國際收支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公正去來廳은 그 合併이 國際收支의 改善에 寄與할 것인가 보다도 國際收支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合併하는 企業들은 輸出增大를 낙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解答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主管長官에 대한 廳長의 勸告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이 될 수 있다.

### 國際收支

外國會社 또는 그 從屬會社가 取得會社로 되는 合併은 英國會社間의 合併과 달라서 國際收支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러한 合併은 輸出市場을 外國의 從屬會社間에 配分하거나, 어떤 특정한 原料, 半製品 또는 심지어 完製品까지도 그 集團內의 다른 會社로부터 받아 들여야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는 研究開發을 하는 施設이 外國에 있게 되는 문제가 있고, 製造施設의 立地의 選擇이 外國企業의 支配를 받게 되어 앞으로의 國內雇傭의 不確實性이 커지기도 한다. 價格은 통상 國內合併에 있어서는 公共의 利益의 문제로 고려되어야 할 要因이 아니지만, 外國會社에 의한 取得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國際收支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 雇 傭

合併이 雇傭에 미치는 短期的 및 長期的 영향은 특히 그러한 合併이 失業이 높은 地域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失業은 需要의 減少나 技術의 發展으로 생기는 失業과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雇傭pattern은 市場이나 產業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社會的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政府의 產業分散政策에 反하는 작용을 하거나, 特定開發地域의 工場廢鎖 또는 操業中斷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合併은 廳長이 主管長官에게 勸告를 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

### 混合合併

混合合併은 競爭에 水平的 또는 垂直的으로 矛盾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長期的으로는 競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테면 어떤 會社가 본래의 自

己市場에서 施設을 更新, 擴大 또는 革新하지 않고 다른 市場의 既存會社를 取得하여 多角化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그 會社가 引受에 필요한 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研究開發이나 그 밖의 필요한 投資를 위한 支出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混合合併을 하는 複合企業은 資源의 内部移轉을 통하여 상이한 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單一市場에 있어서의 企業規模가 가지는 것 보다도 더 크게 市場支配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도 한다. 세째로 混合企業은 다수의 상이한 市場에서 收入을 얻기 때문에 費用減縮이나 效率性 提高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混合合併은 資金과 組織의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技術이나 販賣를 소홀히 하는 위험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公正去來廳은 外部로부터의 引受나 引受의 威脅이 어떤 형태로 保護되고 있는 市場의 會社들에게 좋은 의미의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에 항상 유의하고 있다. 經營能力의 여유가 있는 混合企業이 新市場으로 進入하게 되면 종전에 없었던 有效競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어떠한 多角化는 危險의 分散과 共通費의 節約 등과 같은 순수한 利得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混合企業은 그 전체적 規模가 크고 급속한 成長을 하고 있기 때문에 公共의 利益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향도 있다. 規模나 成長 그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通信, 컴퓨터 및 經營知識이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특히 企業集團이 高度로 集中되고 獨립적인 일련의 利潤中心點을 가지지 않거나, 販賣 및 技術上의 共通的 基盤이 없는 경우에는——規模는 그 자체로서 效率的 經營을 저해할 수가 있다.

以上과 같은 문제들은 어느 것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競爭制限(이를테면 混合企業의 몇 개의 市場이 獨占狀態에 있게 되는 것)이나 다른 公共의 利益의 문제들(이를테면 效率性, 屢傭 및 國際收支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생기는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廳長의 合併提案에 대한 評價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委員會가 調査하는 동안에 드는 當局과 關聯會社의 費用은 金錢的으로나 經營 및 그 밖의 資源의 면에서 매우 크다. 廳長이 合併에 관하여 主管長官에게 勸告하는 목적은 公共의 利益에 중요한 문제로 되는 少數의 合併案을 끌라서 자세한 검토를 하게 하려는 데 있다. 어떤 合併提案은 當事者間에 友好的으로 合意되고 어떤 合併은 강압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廳長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하여 主管長官에게 권고하기 때문에, 合併이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廳長의 勸告內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V.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報告와 그것에 대한 措置

### 1. 委員會의 機能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起源은 「獨占 및 制限的 慢行委員會(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Commission)」이다. 獨占 및 制限的 慢行委員會는 「1948年 獨占 및 制限的 慢行(調查 및 規制)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의 規定에 의하여 商務省이 附議하는 獨占 및 制限的 協定(restrictive agreements)을 審查하고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지 與否를 報告하게 할 목적으로 1948年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뒤로 財貨供給의 制限的 協定의 審查는 「1956年 制限的 去來慢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56)」에 의하여 獨占 및 制限的 慢行委員會로부터 「制限的 慢行裁判所(Restrictive Practices Court)」로 옮겨졌다. 1965年과 1973年 사이에는 「1965年 獨占 및 合併法(Monopolies and Mergers Act 1965)」의 規定에 의하여 用役供給의 制限的 協定은 獨占 및 制限的 慢行委員會를 改稱한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의 管轄에 속하게 되었으나, 「1973年 公正去來法(Fair Trading Act 1973)」이 施行된 뒤로는 모든 制限的 協定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專門職의 制限的 協定만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所管이 되고 있다. 그러나 英國의 合併規制는 獨占委員會가 合併을 調査할 수 있도록 規定한 「1965年 獨占 및 合併法」에서 비롯되었다. 獨占 및 合併委員會는 委員會의 機能——獨占과 合併의 審查와 勸告——을 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1973年 公正去來法」에서 獨占委員會를 改稱한 것이다.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委員은 10인내지 25인의 범위 내에서 主管長官에 의하여 任命된다 (法 第4條). 그리고 主管長官은 委員長 1인과 3인 이내의 副委員長을 任命할 수 있으며, 委員의 任期는 5年이고 連任할 수 있다(法 附則 第2, 3條). 그들은 各 分野에 있어서의 個人的 經歷에 의하여 選任되는데 이제까지는 事業者, 會計士, 法律家, 經濟學者, 經營콘설턴트, 技術者, 勞動組合員 및 前職公務員 등이 포함되고 있다.

委員會는 主管長官이 附議한 合併<sup>(4)</sup>에 관하여 報告하고 勸告할 의무가 있다. 즉 委員會는 (1) 그 合併이 調査對象이 되는지 與否에 관한 事實에 관하여, 그리고 (2) 그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지거나 行하여질 것이라고 예상되는가에 관하여 主管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일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委員會는 主管長官이나 그 밖의 關係

(4) 물론 主管長官은 合併 뿐만 아니라 獨占도 委員會에 附議한다. 그러나 合併의 規制를 다루는 本稿에서는 獨占에 관한 附議는 論議에서 제외한다.

機關, 또는 合併當事者들이 그 合併이 가져오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結果를 是正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行動에 관하여 적당한 勸告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委員會가 어떠한 安全對策도 提示할 수가 없다면, 委員會는 合併을 禁止하거나 이미 取得한 資產이나 株式의 處分을 勸告할 수가 있다. 그리고 法 第69條(4)의 規定에 의한 制限的 附議인 경우에는 委員會는 그 附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合併의 측면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지 與否만을 검토해야 한다.

어떤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지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 委員會는 반드시 그 合併의 特殊한 事情내지는 狀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同法에 의하면 公共의 利益에 관하여 委員會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限定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法 第84條는 公共의 利益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主管長官은 委員會에 合併附議를 할 때에 委員會가 報告書를 提出할 期限을 定한다. 同法에 의하면 그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事件에 따라서는 이 보다도 短期間인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主管長官은 報告書가 定해진 期間에 만들어질 수 없는 特別한 이유를 인정한다면, 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처음에 定해진 期間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 2. 委員會의 節次

合併附議가 있게 되면 委員會의 委員長은 통상 그 附議를 다루기 위하여 5명 이상의 委員으로 分科委員會(group)를 構成한다(法 附則 3, 第10條). 다음에 委員長은 關聯會社들로 하여금 合併하게 된 事情과 理由, 關聯會社의 沿革 및 그 밖에 그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事項을 기록한 文書를 10日 이내에 提出하게 한다. 關聯會社들은 그들의 文書가 接受된 뒤로 加急적 조속한 時日內에 委員會의 審問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委員會의 調査의 주요한 목적은 그 合併과 관련되는 모든 事實을 렬 수 있는 대로 완전하게 究明하려는 것이다. 主管長官은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合併附議를 公表하고, 委員會도 合併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會社나 個人 그리고 團體에 통지한다. 當事者들과의 合併에 관한 審問에서 委員會는 關聯會社들의 陳述에 대하여 事實確認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時間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委員會는 2次 審問에 앞서서 그 때까지 밝혀진 公益의 問題도 調査한다.

그러나 통상 公益의 問題는 1次 審問에서 충분히 결말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이더한 問題는 주로 2次 審問에서 논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次 審問은 특히 중요한 事實을 확인하고 가능한 對策을 探索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關聯會社는 2次 審問에 앞서서 公益 問題

에 관한 意見書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義務的인 것은 아니다. 委員會의 審問에는 흔히 會社를 代表하여 辯護士가 출석할 수도 있다.

委員會는 合併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第三者의 意見을 듣기도 한다. 委員會는 이러한 意見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内容을 公共의 利益의 문제와 관련하여 合併會社와 論議하고, 그들의 見解를 들을 수도 있다.

통상 모든 중요한 문제는 關聯會社들이 제출하는 陳述書나 그들과의 審問을 통하여 제기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자세한 調査 특히 利潤이나 費用 또는 生產性에 관한 調査는 필요에 따라서 委員會의 職員이 해당되는 會社代表와 접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상의 節次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委員會는 主管長官에게 報告書를 提出하고, 公正去來廳長에게 그 寫本을 送達한다. 合併報告書의 첫부분은 關聯會社들의 沿革과 現在의 活動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다음에는 關聯會社들의 合併에 관한 陳述이 第三者의 그것에 대한 見解와 함께 要約된다. 이것이어서 委員會의 結論이 붙는데, 그 結論은 그 合併이 調査對象으로 되는 法律的 基準을 充足시키는가, 여러가지 公共의 利益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그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행하여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만일 委員會가 그 合併이 調査對象이 되는 合併이고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委員會는 公共의 利益을 손상하는 要因을 是正 또는 防止하거나, 合併을 禁止 또는 分割하는措置를 勸告한다.

이상은 委員會가 현재 취하고 있는 節次를 약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節次는 同法에 의하여 定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變更될 수 있다. 왜냐하면 委員會는 가급적 신속하게 철저한 調査를 수행할 수 있는 節次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 3. 委員會의 報告書에 대한 措置

獨占 및 合併委員會의 報告書를 受理한 主管長官은 그것을 國會에 提出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公益上 公開될 수 없는 事項을 職權으로 刪除하는 경우를 例外하고 報告書 全文을 公開하여야 한다(法 第83條). 그리고 報告書를 公開할 때에 主管長官은 報告書에서 勸告된 措置에 관하여 자기의 結論을 國會에 알리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公正去來廳長은 合併附議에 관한 모든 報告書의 寫本을 受理하고 그것에 관하여 主管長官에게 助言을 한다. 助言을 함에 있어서 廳長은 關係되는 政府部處와 協議를 거치지만 그들의 見解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同法에 의하면 主管長官은 委員會의 報告書에 포함된 勸告과 廳長의 助言을 참고하여야 한다.

만일 委員會가 合併이 公共의 利益에 反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主管長官이 廳長의 助言

을 참고로 하여 그 합併을 防止하는 決定을 하였다면, 前述한 바와 같이 主管長官은 廳長으로 하여금 當事者들로부터 自發的 約束을 얻어내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法 第88條). 이러한 約束에는 그 합併推進의 中止, 目標會社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處分, 目標會社株式의 議決權行使의 制限 등이 포함된다.

또한 主管長官은 報告書에서 지적된 短點을 是正하거나 防止하는 命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法 第73條 및 附則 8). 만일 합併이 成立한 뒤라면, 資產을 販賣하여 會社를 分割하거나, 從屬會社를 販賣하여 企業集團을 分離하는 命令이 發動된다(法 第73條).

當事者들로부터 얻은 約束이나 主管長官의 法律的 權限에 의하여 취해지는 命令은 公開된다. 통상 約束文書의 寫本은 공식적으로 廳長에게 移送되는데, 이것이에 의하여 그는 約束의 履行을 계속 監視하고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상의 행동을 권고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그는 自發的 約束의 有效性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命令을 發할 수도 있다.) 廳長은 또한 합併과 관련되는 法律的 命令을 계속 監視하고,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命令의 变경을 勸告하는 責任을 갖는다(法 第88條).

## VI. 結語

이상의 論議를 통하여 우리는 英國의 합併規制制度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英國의 합併規制制度는 합併은 競爭을 沮害하고 產業集中을 助長하는一面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產業의 成果를 改善하는 중요한 手段이 되므로 합併 그 自體를 惡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英國의 합併規制政策은 모든 합併 중에서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합併을 選別的으로 規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公共의 利益이라는 概念에는 競爭의 促進뿐만 아니라 產業의 效率性, 企業의 國際競爭力, 國際收支, 雇傭 등과 같은 그 때 그때에 추구되는 여러가지 經濟政策의 目標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競爭促進을 강조하는 합併規制論의 立場에서는 英國의 합併規制政策은 現實肯定의이며 獨占擁護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劃一의인 基準을 設定하여 합併을 規制하기 보다도 그 產業이 處해 있는 狀況과 그 動態的 變化를 고려하여 합併을 規制하는 現實의이고 個別의인 英國의 接近方法은 企業合併을 規制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英國에서는 다른 나라에 比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합併이 規制된다. 즉公正去來廳長은 公正去來廳에 의하여 認知된 합併事件을 합併審議會(Mergers Panel)의 論議를

거쳐서 主管長官에게 報告하고, 主管長官은 이 報告를 근거로 하여 獨占 및 合併委員會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에 대한 合併附議(merger reference)를 決定한다. 獨占 및 合併委員會가 附議된 合併을 調査하여 主管長官에게 報告하면, 主管長官은 이 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고, 公正去來廳長으로 하여금 合併을 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받아내게 하거나 그것을 禁止하는 法律的 命令을 내린다. 이와 같이 合併은 그 자체로서 惡이라는 認識이 缺如되어 있는 英國에서는 合併을 規制하는 制度도 또한 복雜하고 신중한 節次를 거치고 있다.

本稿는 英國의 合併規制制度에 대한 概略的 考察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에 比하여 合併規制의 基準이 多元的이고 政策推進에 신중하고 단계적 節次를 規定하고 있는 代表的인 制度로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 1982*, Fair Trading Office, 1983.
- Annual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in OECD Member Countries*, OECD, 1982.
- Comparative Summary of Legislations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OECD, 1978.
- J.P. Cunningham, *The Fair Trading Act 1973*, 1974.
- Guide to Legislation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Vol. II, OECD.
- Mergers: A Guide to the Procedures under Fair Trading Act 1973*, Office of Fair Trading, 1978.
- Review of Monopolies and Mergers Policy: A Consultative Document*, Cmnd. 7198 (HMSO), 1978.
- Review of Restrictive Trade Practices Policy: A Consultative Document*, Cmnd. 7512 (HMSO), 1979.
- M.C. Sawyer, *The Economics of Industries and Firms*, 1981.